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9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곽동환 의원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자문,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환경시책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안 제명)
- 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 제2조)
-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자문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
- 라. 폭넓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가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제6호)

- 바.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
- 사. 재정지원, 환경시책 장려를 위한 홍보물(기념품) 제공 신설
(안 제10조)
- 아. 회의 참석, 자원봉사 등 실비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 2. ---「환경교육법」-----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 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6. (생략)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 ----- 1.~6.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신 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 -----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② 군수는 환경사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사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가자재 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사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1. 1. 5, 전부개정, 2022. 6. 10.,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3. 3. 1.] 제10조의2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